IDI연구보고서 2011-57

지속가능발전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Preliminary Study on the Vision and Policy Dir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cheon

조 경 두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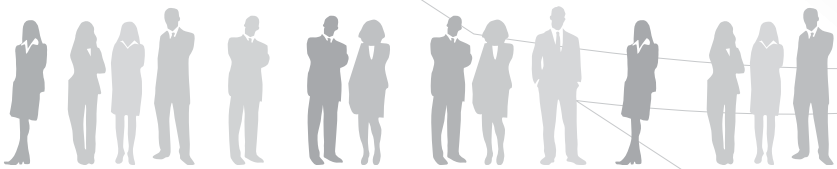

연구진

연구책임 ● 조경두 /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제언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지역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적자원, 제도, 녹색성장 역량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상향식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상충한다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녹색산업과 기술, 환경자원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업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통합·수립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정리와 추진여건, 장기비전, 목표설정 등에 대한 선행검토를 위한 연구로 수행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1) 국제사회 동향

○ 1992년에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의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림.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선언문은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고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

○ 1992년 리우회의 개최 20주년인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Rio+20 지속가능발전 UN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실행의지를 되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녹색경제, 제도적 체제 정립을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음.

○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적 활동의 역할과 기여를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임. 품위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합리적 경력관리, 노동자의 권리 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에의 영향, 자원남용과 자원의 질을 포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녹색경제인 것임.

○ UN조직구성은 UN헌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등 6개의 조직, UNEP이나 UNFCC와 같이 6개의 조직 아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하부조직들이 있음. 1992년 계획이 완성되었음에도 지속가능정책을 견인하지 못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이는 지속가능정책을 위한 기구인 UNEP과 UNCSD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기구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옴.

○ UN 지속가능발전이사회(UN SD Council)를 제안하고 WTO, WHO와 유사한 세계환경기구(WEO)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통적인 입장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에 기반한 지구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로 변화하여야 하고 지방정부와 NGO, 기업 등을 주체적 이해당사자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임.

2) 국내 동향

○ 2005년 6월 국정철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천명하고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이 있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6년 10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이 수립

되어 5대 핵심 정책분야, 48개 이행과제, 229개 세부과제를 수립·확정되었음.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이행계획의 안정적인 수립과 추진, 점검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 77개의 분야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를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하였음.

○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는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활동 영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 사회적 갈등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물관리 정책, 국토 및 자연정책 수립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6년 출범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및 추진기반 구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단계로 설정,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 노력 강화에 주력하였음.

○ 환경부장관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0년 9월 9일 제6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녹색성장위원회는 2008년 8.15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훈령을 공포하여 2009년 2월 16일 제1기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음.

○ 2009년 12월 29일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1년 1월 13일 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7월 13일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녹색제도·금융,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발전의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총 7장 64개 조문으로 구성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은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50년까지의 장

기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2013년까지의 중기계획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는 3대 전략(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및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태

1)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태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시민, 기업, 행정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환경, 교통, 문화, 복지, 지역경제, 도시공간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현재 기초의제21실천협의회는 남구(2003), 남동구(2004), 계양구(2006), 부평구(2008), 서구(2008)에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구와 강화군에는 기초의제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에서 인천에서는 지방의제21제도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고 2007년 8월 3일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확보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문제가 인천지역사회에 대두되었으나 또다시 무산되었음.

○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인천 RCE)는 2006년 12월 승인된 이후, 2009년부터 인천의제21에서 운영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인하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 인천 RCE에는 인천광역시의 평생학습팀, 국제협력과, 환경정책과 등과 인하대, 인천대,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 외에도 LH공사는 지속가능발전 도시계획 분야, 인천관광공사는 생태관광 분야,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관으로는 환경분야의 UNEP과 경제경영분야의 UNESCAP 등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 부평구

는 2011년 11월 16일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

-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수립·정착 - 성숙 - 심화의 3단계로 구분
- 보고서는 기존의 폐쇄적 행정운영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행정의 문호를 민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부평의 자산인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공무원과 민간이 힘을 합해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경제 및 산업계획과 도시계획, 환경계획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부평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정하였음.

2) 녹색성장정책 추진실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녹색산업·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인프라의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2009년 7월 14일 국가전략 녹색성장 3대 전략 10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 2009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2009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2009~2013)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음.

-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별로 단위사업을 예산비중으로 보면, 녹색공간 및 저탄소도시 인프라 확충과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조 1,075억원의 사업예산 중 10개 사업의 예산비중이 94%를 상회함.
- 녹색성장사업의 다양한 추진주체가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자가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단위사업별로 정량화된 성과지표와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음. 대부분 공정진도율에 의존하다보니,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등 총괄적인 정책목표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앞에서 분석된 실태를 통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실제 녹색성장 정책사업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업들이 무더기로 함께 담겨 있음
- 인천광역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들을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인천광역시의 녹색성장 정책은 그 구성체계의 방대함이나 짜임새에 비해 핵심 사업 몇 개가 투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정책의 수많은 영역에서 그 실행력을 대단히 취약하게 만듦.
- 인천광역시 녹색금융은 실제 실행되고 있는 몇몇 예들에서 보면 예산투입 절대액이 너무 작고 그 대상 범위도 매우 좁은 실정임.

■ 정책제안: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존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하며 한 사회 내의 형평성과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뿐 아니라 인간과 다른 생물종 간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적절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은 통합적 접근이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 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서 간의 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있고 시정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로 세부사업들을 배치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과제 수립 과정은 하나의 이행과제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부서의 세부사업들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서 간의 수평적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의 자기 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삼을 수 있음. 거버넌스 관점은 이미 행정의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고, 시민참여예산제와 같이 다양한 제도에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에너지 사업 등의 경우 시민의 주체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1)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의 비전

○ 지속가능발전의 틀 속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인 녹색성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 “시민사회”라는 3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키워드로 표현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지향점을 모은 “더불어 행복한 녹색경제공동체, 인천”이라는 비전을 제안함.

○ “환경”은 쾌적하고 푸르른 환경과 건강한 공생을 의미하며 “경제”는 풍요롭고 미래지향적인 녹색경제를 의미하고 “시민사회”는 웃음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미임.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조례 등 제도정비와 행정조직 및 업무평가 연계, 지속가능성 지표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견실한 거버넌스 재건, 문화환경교육 및 전방위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기반”을 추가함.

2)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개선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기조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 녹색정책의 추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행정력을 낭비하고 민원유발요인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녹색성장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및 유관활동 정비가 필요

- 현 조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부서의 인력과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조율 및 전담기관의 권한을 강화
- 사업별로 환경개선효과와 경제적 효율증진효과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분석작업
- 녹색성장과 관련한 각종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정책수단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과정에 따른 성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책자료를 확보
-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적 기여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접근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경쟁적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
-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축과 확대

○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또는 기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통합정비하기 위한 (가칭)“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추진전략과 체계구축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할 것임.

3)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및 기능강화

○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통합 및 기능강화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3개의 대안 검토가 가능함.

1안) 녹색성장위원회 확대개편안

2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양립안

3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폐지안

○ 단기적으로 1안)을 채택하되,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유지하거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4)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의 효율적 관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관련 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통합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5)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 인천광역시 군·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군·구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군구이행계획,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인천광역시의 산하 공기업에서도 통합경영을 시작하는 시점을 계기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6)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및 성과관리

○ 조직이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를 향해 조직원들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지표이며 정책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해 행정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임. 또한 이행과제 단위의 논의에서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는 각 부서 사업들 사이의 예산 효율성이 평가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키워드 :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RIO+20,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

- 목 차 -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제2장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 9

제1절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국제사회의 동향 ····· 9

1. 지속가능발전과 RIO+10 ····· 9

2. 2012년 RIO+20 회의 ····· 10

제2절 지속가능발전과 국내 동향 ····· 15

1.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 15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 16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18

4. 녹색성장 정책 ····· 19

제3절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특성과 내용 ····· 21

1. 지수 개발 경위 ····· 21

2. 환경지속성지수(ESI) ····· 23

3. 환경성과지수(EPI) ····· 25

4. 지속가능발전지표(SDI) ····· 27

제3장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태 ····· 33

제1절 인천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실태 ····· 33

1.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33

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35

3.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 ····· 37

4.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전략보고서 ····· 39

제2절 인천녹색성장정책 추진실태 ····· 43
1.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 43
2.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 44

제4장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 57
제1절 시정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 도입 ····· 57
1. 행정가치로서 지속가능발전 ····· 57
2. 행정패러다임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 57
3. 행정의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서 지속가능발전 ····· 58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 59
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비전 ····· 59
2.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목표와 과제 ····· 59
제3절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및 정비방안 ····· 61
1.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개선 ····· 61
2.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 ····· 63
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68
4. 지속가능발전 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 7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7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73
제2절 정책제언 ····· 76

참고문헌 ····· 81

- 표 목 차 -

<표 2-1>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지표의 특성 비교 ····· 22
<표 2-2> 환경지속성지수(ESI) 구성체계 ····· 24
<표 2-3> 2002년과 2006년 환경성과지수(EPI) 구성 비교 ····· 25
<표 2-4> 2002년 EPI 변수 구성 ····· 25
<표 2-5> 2006년 EPI 변수 구성 ····· 26
<표 2-6> 주요 국가 및 기관별 SDI 지표 구성체계 ····· 28
<표 2-7>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2005) ····· 29
<표 3-1>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 혁명부문의 단위사업 ····· 47
<표 3-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부문의 단위사업 ····· 48
<표 3-3>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부문의 단위사업 ····· 49
<표 3-4> 녹색공간 및 저탄소도시 인프라 확충부문의 단위사업 ····· 50
<표 3-5>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20대 과제별 사업예산 ····· 51
<표 3-6>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단위사업 ····· 52
<표 4-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유관 위원회 현황 ····· 64
<표 4-2>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현황 ····· 67

- 그 림 목 차 -

<그림 2-1> RIO+20 회의의 준비과정의 주요주체들 ····· 12
<그림 3-1>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5대 전략 ····· 41
<그림 3-2> 부평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의 기조 및 전제 ····· 41
<그림 3-3> 국가전략 녹색성장 3대 전략 10대 과제 ····· 45
<그림 3-4>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비전과 전략 ····· 46
<그림 4-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안) ····· 60
<그림 4-2> 인천광역시의 녹색성장위원회 기능 보강(안) ····· 6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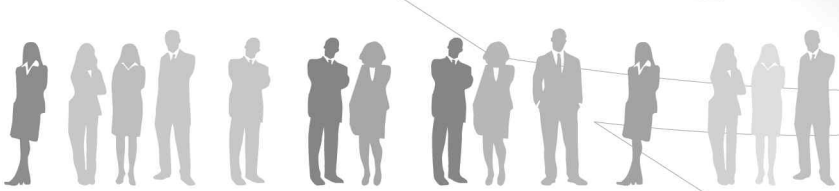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과 비판,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 등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발전하였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뉴딜' 등 녹색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련 계획과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으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지역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적자원, 제도, 녹색성장 역량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상향식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상충한다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녹색산업과 기술, 환경자원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업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한다. 따라서 2012년 4월 15일 시행예고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의 ①에 따른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제50조의 ⑤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통합·수립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정리와 추진여건, 장기비전, 목표설정 등에 대한 선행검토를 위한 연구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녹색뉴딜' 정책이 진정한 '녹색'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1]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지역 단위에서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여건과 잠재력을 검토하여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과 건전한 거버넌스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검토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법령 검토와, 관련계획에 나타난 주요 지표에 대한 검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관련기관의 정책 및 시책에 대한 검토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태와 여건분석은 인천광역시와 군구 행정기관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지역 기초의제 추진기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정책 중 중요한 시책과 계획을 대상으로 추진실태를 검토하였다.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기비전과 목표는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정책목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인천지역의 추진실태와 여건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의 기회와 제약조건을 정리하였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기비전과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및 정비방안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방안을 위주로 정리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제시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후속적인 시책평가와 지표개발 과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실천항목과 예산편성의 실태 뿐 아니라 실

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개념적 고찰은 함태성(2009), 전재경(2009), 천대윤(2011) 등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천항목이나 지표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통합·수립을 위한 선행적인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관련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확립하고 해당 시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 작성을 위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제1절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2절 지속가능발전과 국내 동향

제3절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특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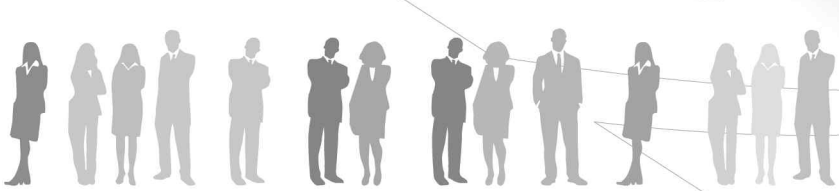

제2장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제1절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국제사회의 동향

1. 지속가능발전과 RIO+10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인간환경회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의에서 환경문제를 처음으로 국제적인 의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속가능발전이 공론화된 것은 1983년 유엔총회에서 노르웨이 노동당 총재인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를 의장으로 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창설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공동의 미래」(1987)(「브룬트란트 보고서」, Brundtland Report)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명시하게 되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2].

○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Sandton 컨벤션 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는 1992년에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의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다.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정치적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선언문은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

2) 이정전(2000)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행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의제2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정치적 약속[3]이었다.

2. 2012년 RIO+20 회의

2009년 12월 제64차 UN총회에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20주년이 되는,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Rio+20 지속가능발전 UN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는 1992년 리우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실행의지를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UNCSD 2012에는 전 세계 고위급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년 간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에 대한 통합적인 노력들이 다국적 환경협약, 선언문, 조직구성, 정치적 책임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며 20년간 진행되어 왔다. 이들이 그 때 그 자리에 다시 모여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행동계획과 의지를 다시금 되살리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009년 12월 UN총회는 결의문 64/236에서 Rio+20회의의 목적과 주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사명감을 새로이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외교적·정치적 과정을 통한 책임 있는 연계를 유도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대표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이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정상회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롭게 부상한 도전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공유한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와

3) 최정철(2011), "인천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화 전략", 인천지속가능발전포럼 창립세미나 : 지구사회와 인천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제도화 전략,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식량위기, 기후안보를 포함한 시급한 도전과 위협이 무엇인지를 목록화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가지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제1주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4]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은 2011년 1월 녹색경제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서 '녹색경제는 환경적 위협과 생태적 자원의 고갈을 현격히 완화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2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Institutional Framework)를 만드는 것이다.

Rio+20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문서는 향후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회원국 및 유엔기구들은 결과문서에 반영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및 국제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RIO+20 회의는 국제환경거버넌스를 다시 분석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 특히 UNEP과 UNCSD의 역할은 무엇인지, UN시스템 전반이 일관된 가치를 위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적 재정지원 기관의 역할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림 2-1>은 Rio+20 회의를 준비하는 데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주요 주체들을 요약한 것이다. 주요 주체 중 특히 지방정부는 UN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 그룹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해왔고, 지방정부가 정부기구로서 특별한 지위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이러한 요구는 2010년 12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 16)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정부이해당사자(governmental stakeholders)'로 표기되는 것으로 반영되어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ICLEI-Local Governments

4)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공감하고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country tailored)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for Sustainability(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 영역의 조직 파트너로서 공식적인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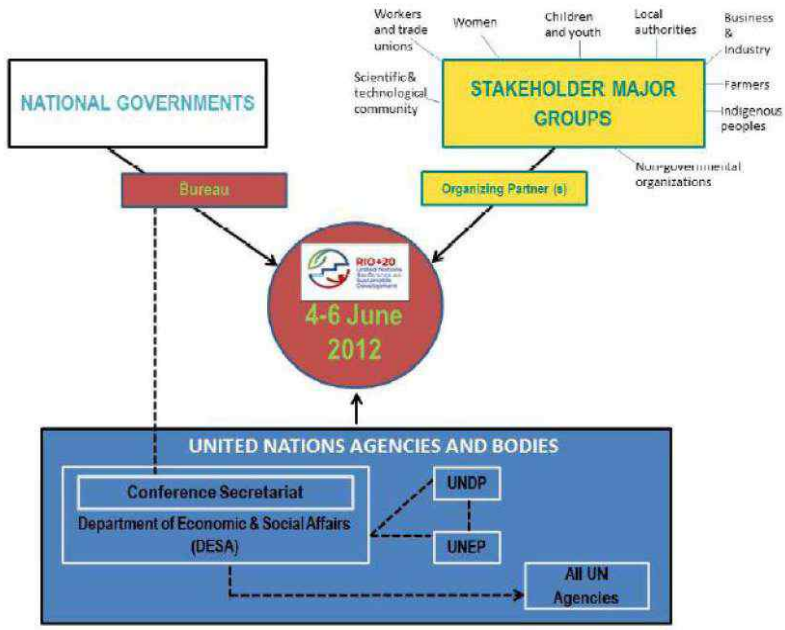

<그림 2-1> RIO+20 회의의 준비과정의 주요주체들

하지만 RIO+ 20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UN의 의지가 약하다는 점에 연유한다. 우선 각 국가의 정상들을 대표자로 참여하기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회의제목을 정상회의로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어표현으로 "분석하고 확실하게" 이런 식의 표현으로 명시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등의 확고한 의지표현이 빈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5) Konrad Otto-Zimmermann(2011. 7.), “RIO+ 20과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ICLEI 전략”, RIO+ 20과 한국지방의제21,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푸른경기21실천협의회·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녹색경제(Green Economy)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의 3가지를 핵심으로 놓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녹색경제를 앞세우는 이유는 녹색환경사회가 지속가능사회에서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살고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자연과 사회보다는 경제의 영향력이 크다는 논리와 관련된다.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자원 중 자연에서 오지 않는 것이 없고 경제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구조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제를 녹색경제라고 하는 틀을 통하여 제대로 순환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 보다 지속가능발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으로 많다. 이러한 논리의 찬성그룹은 주로 선진국, 기업, UN이다.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적 활동의 역할과 기여를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생태, 사회, 건강한 경제활동의 혜택을 재인식하는 것으로서, 품위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합리적 경력관리, 노동자의 권리 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에의 영향, 자원남용과 자원의 질을 포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녹색경제인 것이다. 이처럼 녹색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때 이루어지는 투자 역시 녹색경제인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시민사회그룹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더 큰 프레임인데 이것을 녹색경제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녹색경제에 대한 각 그룹의 제안사항 역시 매우 차별적이다. 유럽권에서는 형평성과 재정지원, 기술[6]에 대한 우려, 핵과 관련한 처리비용의 법제화문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태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녹색경제와 관련되는 문건에 '녹색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녹색경제에 대해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고, 지속가능발전이 더 큰 개념으로서, 환경과 경제만을 포괄하는 녹색경제를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 주로 GEO-ENGINEERING과 관련되는 기술로서, 탄소포집기술이나 구름이 빛을 반사해서 지표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도록 구름을 하얗게 하는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Institutional Framework)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UN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조직구성은 UN헌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등 6개의 조직, UNEP이나 UNFCC와 같이 6개의 조직 아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하부조직들이 있다.

그동안 1992년 RIO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획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정책을 견인하지 못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속가능정책을 위한 기구인 UNEP과 UNCSD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기구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지속가능'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한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정책의 주류로 하기 위한 어떤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유럽권에서는 현재의 UNEP를 책임과 재원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태지역에서는 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UNCSD를 결성했는데, 하위기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실무적 자문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발전 이사회에 재원을 마련하고 그 흐름을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륙별로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현재의 거버넌스와 정책, 미래 경제와 사회의 생사 결정"

UN 지속가능발전이사회(UN SD Council)을 제안하고 WTO, WHO와 유사한 세계환경기구(WEO)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간 환경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에 기반한 지구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로 변화하여야 하고 지방정부와 NGO, 기업 등을 주체적 이해당사자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이 글로벌 이슈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의 실천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문제를 도시의 단계로 내려서 생각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처럼 지속

가능발전에 있어 지역과 글로벌을 연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참여가 시스템의 구성에 중심이 되고 있다.

제2절 지속가능발전과 국내 동향

1.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2005년 6월 국정철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천명하고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이 있었다.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정책 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비전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화와 실천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5대 핵심 정책분야, 48개 이행과제, 229개 세부과제를 수립·확정하였다.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이행계획의 안정적인 수립과 추진, 점검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2011년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 77개의 분야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를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등 지역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을 작성했는데, 비전확립과 추진체계 구축, 실천역량 강화, 평가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7대 중점과제를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2007년에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 발표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에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제시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2000년 9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13개 관련부처장관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등 33명의 위원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출범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 10월 2년간의 제1기 위원회 운영성과를 토대로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친환경성 제고 기능을 강화한 제2기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활동 영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 사회적 갈등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물관리 정책, 국토 및 자연정책 수립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5월 출범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및 추진기반 구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단계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및 평가시스템의 확립, 거버넌스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확산을 축으로 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 노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2007년 8월 3일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5조에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14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기

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하여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격하하고 동법 제15조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격하시켰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3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련 조례 제정,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과 공표, 지방의회보고와 관련 조례제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수준에서만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를 남겨 두었다. 현재 환경부장관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0년 9월 9일 제6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08년 8.15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훈령을 공포하여 2009년 2월 16일 제1기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다.

2009년 12월 29일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1년 1월 13일 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제14조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7월 13일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당연직 위원 13명과 위촉직위원 35명이 위원으로 있고, 녹색제도·금융,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발전의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정했던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원칙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4. 녹색성장 정책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총 7장 64개 조문으로 구성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9년 7월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속에 담겨 있다. 이들은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녹색성장 국가

전략"은 205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2013년까지의 중기계획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는 3대 전략(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및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10대 정책방향은 다시 50대 실천과제로 구분되며 50대 실천과제는 다시 387대 세부실천과제로 구분된다. 부문별 녹색성장 정책은 크게 에너지 정책과 신성장동력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9년 총리실 주관으로 녹색성장 부문 평가가 실시[7]된 바 있다. 평가 대상기관 및 과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09.7)"에서 중점 추진 중인 18개 기관의 22개 과제를 대상을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우수, 보통, 미흡)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보통이 대다수였다. 중앙정부의 몇몇 주요 녹색성장 정책의 진단 결과[8]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연료전지와 IGCC를 포함), 단기에는 "C"등급이고 장기에는 "A~C" 등급이 유력하다. 녹색기술의 경우는 "A"등급에 해당되며,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B 또는 C" 등급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은 "C"등급의 대용 녹색성장 정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D"등급의 유사 녹색성장 정책과 "E"등급의 위장 녹색성장 정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치가 추세적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에 해당하

---

7) 유영성 외, 2010, 녹색성장 정책의 진단 및 개선안, 정책연구 2010-32, 경기개발연구원.

8) 녹색성장 정책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 A급 녹색성장 (정상 녹색성장: Prime Green Growth) 정책 : 환경도 개선시키고 소득도 증가시키는 녹색성장 정책

○ B급 녹색성장 (준 녹색성장: Sub-Prime Green Growth) 정책 : 환경개선은 없으나 소득증가가 있는 상태이거나 소득증가는 없으나 환경개선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성장 정책

○ C급 녹색성장 (대용 녹색성장: Ersatz Green Growth) 정책 : 환경은 악화되나 소득증가가 있는 상태 혹은 환경개선이 되나 소득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소득증가 정도가 환경악화 정도 보다 크거나 환경개선 정도가 소득감소 정도보다 큰 경우를 야기하는 녹색성장 정책

○ D급 녹색성장 (유사 녹색성장: Pseudo Green Growth) 정책 : 환경은 악화되나 소득증가가 있는 상태 혹은 환경개선이 되나 소득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소득증가 정도가 환경악화 정도 보다 작거나 환경개선 정도가 소득감소 정도보다 작은 경우를 야기하는 녹색성장 정책

○ E급 녹색성장 (위장 녹색성장: Disguised Green Growth) 정책 : 환경도 악화되고 소득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녹색성장 정책

기 때문에 잘해야 “C”등급(대용 녹색성장) 수준에 불과한 상태를 발생시키곤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정부의 주된 관심이 신재생에너지의 물량적 확대에 치중하는 공급 우선주의 정책에 있다. 넷째, 차액발전제도(보조금)의 폐지에 이은 의무공급제도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에너지 보급차원의 정책으로서는 유의미할지 몰라도 녹색산업적 관점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이다.

제3절 지속가능발전 지표[9]의 특성과 내용

1. 지수 개발 경위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념으로 확립하였다. 의제21 제40장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범세계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년 12월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결정된 의제21의 실행여부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996년 UNCSD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 발표하였는데, UNCSD와 OECD, EU, 미국, 영국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에서 실험적 ESI(pilot study)를 발표한 이래 2001, 2002, 2005년 국가별 환경지속성을 비교·평가한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를 발표하였다. 2002년과 2006년 환경지속성지수와 더불어 환경관리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설정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

9) 박희일·김용남, 2006,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 및 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 극동정보대학논문집 제13집, 극동정보대학, pp.495-521.

<표 2-1>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지표의 특성 비교

구 분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성과지수(EPI)	지속가능발전지표(SDI)
개 념	환경·사회·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비교	환경개선정도를 계량화한 지수로 국가별 환경개선노력을 평가	환경, 경제, 사회지표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
작성기관	세계경제포럼(WEF) (예일대/컬럼비아대학)	세계경제포럼(WEF) (예일대/컬럼비아대학)	각 국가 및 기관
지표구성	5개 분야 76개 지표 환경의 질, 환경오염부하량, 환경위해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	6개 분야 16개 지표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환경보건, 지속가능 에너지	4개 분야, 지표수는 국가별 상이 사회, 경제, 환경, 제도
평가방법	지표별 현재치를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로 순서화(지수화)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	변수별로 목표치를 설정, 그 달성도를 지수화하여 평가	지표별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
평가결과	2002 : 142개국중 136위 2005 : 146개국중 122위	2002 : 23개국중 15위 2006 : 133개국중 42위	국가간 비교 없음
한계점	각종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한계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자료를 사용, 불확실성 노출 상대적 비교로 수치가 개선되어도 순위가 하락하는 사례 발생 주관기관 의도에 따라 변수를 조정하여 평점 및 순위조정 가능	실제 정부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고 지표의 목표치와의 달성도만을 표시, ESI와 차별화 미약 대기질, 수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변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	지표의 기초자료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적어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기 곤란 자료가 나라마다 달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표 개발 곤란 지표가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표간 통합과 연계, 지수화가 어려운 문제점 내포

2.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는 현재의 환경·사회·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국제평가지수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후원으로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학이 개발·연구하여 2001년과 2002년 발표하였으며 2005년에는 코카콜라사의 후원을 받아 수행한 결과를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였다.

ESI는 환경의 질, 환경오염 부하량, 환경위해 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국제적 책임공유 등 5개 분야, 21개 지표, 76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수의 수는 2001년 67개에서 2002년 68개, 2005년 76개로 늘어나고 있다.

ESI는 평가변수와 지표별 각국의 역량을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로 순서화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국가별 역량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변수의 평균으로 지표값을 산출하고, 지표의 평균값으로 전체 값을 산출한다.

평가대상국가는 입수가능한 자료의 수와 국토면적, 인구에 따라 선정한다. 1차로 변수 중 60% 이상(76개 중 45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자료가 입수된 국가를 선정하고, 2차로 국토면적이 5,000㎢미만이고 인구 10만명 미만인 국가를 제외한다. 이 때, 평가자료는 개별국가 제공자료가 아닌 국제기관이 작성한 통계자료나 대학 등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사용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ESI 평가결과는 2002년도 142개 국가 중 136위, 2005년도 146개 국가 중 122위였는데, 환경의 질과 환경오염 부하량,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국제적 책임공유 등 4개 분야는 상승했지만 환경위해 취약성 분야는 하락하였다.

ESI는 평가년도별로 평가변수가 조정되는 등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변동성을 가진 지수로서 주관기관 의도에 따라 변수를 조정하여 평점 및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불확실성과 한계를 노출하게 되며, 절대수치가 아닌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개선되어도 다른 국가의 순위가 개선될 경우에는 평점과 순위의 하락이 불가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 2-2>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구성체계

구분	지표	변수명
5개	21개	76개
환경의 질	대기질	SO_2/NO_2/TSP 농도, 실내공기오염
	수 질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인 농도, 부유물질
	수량	가용수자원량/가용지하수량
	생물종	멸종위기 포유류/조류/양서류 비율/생태위기지역비율. 국가생물다양성지수
	토지이용현황	절대보전지역비율 / 개발지역 비율
환경 오염 부하량	대기오염 부하	NOx/SO_2/VOCs 배출량, 석탄 소비량, 자동차 대수
	수질오염 부하	비료/농약사용량, 산업체BOD배출량, 물부족지역
	생태계 부하	산림면적변화, 산성화지역
	소비/폐기물부하	생태계 파괴, 유해폐기물발생량, 재활용율
	인구부하	출생율, 인구변화전망
	자연자원관리	수산자원 남획, 지속가능관리인증산림면적, WEF 보조금설문, 염화지역 비율, 농업보조금
환경 위해성	기본생활조건	영양결핍율, 위생급수인구
	환경보건	아동호흡기질환 사망, 내장전염질환 사망률, 5세이하 유아사망률
	자연재해취약성	재해사망율, 재해노출지수
사회 제도적 대응 능력	과학기술	혁신지수, 고등교육기관진학율, 여성초등교육율 디지털접근지수, 연구종사자 수
	환경거버넌스	정치적 자유, 민주적 제도, IUCN회원수, 법의 지배, 과학분야 지적생산, CSD 누락변수, 지방의제21수, 휘발유가격, 부패대책, 보호지역비율, 정부효율성 WEF환경거버넌스,
	민간분야 대응	ISO14001인증, DJSI 기업수, 에코밸류21, 민간환경혁신, RC 프로그램 참여도
	생태 효율성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비율
국제적 책임 공유	국제협력 동참노력	국제환경기구가입, 국제환경협약가입, 양자/GEF지원
	온실가스배출량	1인당 배출량, GDP당 배출량
	월경성 환경오염	SO2 월경, 오염유발상품수입비율

3. 환경성과지수(EPI)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각 국의 환경개선정도(performance)를 계량화한 지수로서 국가별 환경개선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ESI를 작성하는 미국의 예일대와 컬럼비아대학에서 2002년, 2006년 2차례에 걸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였다.

2006년도 EPI 평가변수는 2005년도 ESI 평가변수 중 대기질, 생물다양성 등 환경과 관련된 6개 분야의 평가변수를 활용하였는데, 6개 분야 16개 변수로 구성되었던 2006년의 EPI의 구성은 <표 2-3>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2-3> 2002년과 2006년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구성 비교

구 분	2006 EPI	2002 EPI
평가항목	6개 분야 16개 변수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환경보건, 지속가능 에너지	4개 분야 13개 변수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국토보전
평가방법	변수별로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 그 달성도를 평가	'90년을 기준으로 '97년까지의 개선된 정도를 평가

EPI에 의한 평가방법은 평가변수별로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는 2002년 23개 선진국 중 15위, 2006년 133개 국가 중 42위였다.

<표 2-4> 2002년 EPI 변수 구성

분 야	변 수
대기질	SO_2 농도(㎍/㎥), NO_2 농도(㎍/㎥), 납농도(㎍/㎥), PM_{10} 농도(㎍/㎥)
수질	용존산소량(mg/l), 인농도(mg/l), BOD
기후변화	GDP당 CO_2 배출량,1인당 CO_2 배출량
국토보전	인구밀집지역당 폐기물매립량, 전 국토중 보호면적, 종이재활용률, 유리재활용률

<표 2-5> 2006년 EPI 변수 구성

분 야	변 수 (10개)	목 표	비고
대기질	도시지역 PM_{10} 농도(㎍/㎥)	0	
	오존농도(ppb)	15	
수자원	주요 강의 질소농도(㎎/ℓ)	1	
	물부족지역비율(%)	0	
자연자원	벌채율(%)	3	
	수산자원 남획(1~7)	1	
	농업보조금비율(%)	0	
생물다양성	절대보전지역 비율(%)	90	
	보호생태지역 비율(%)	10	
	벌채율(%)	3	중복
	물부족지역비율(%)	0	중복
지속가능 에너지	GDP당 에너지효율성	1,650테라줄/백만$ GDP	
	재생에너지비율(%)	100	
	GDP당 CO_2 배출량	0t/백만$ GDP	
환경보건	위생급수인구(%)	100	
	위생시설접근인구(%)	100	
	1~4세 사망률(%)	0	
	실내공기질(%)	0	
	PM10 농도(㎍/㎥)	0	중복

EPI가 환경성과지수라고는 하지만 실제 정부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고 목표치와의 거리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ESI와의 차별화가 미약하고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우려가 있다. 위생급수인구 100%, 절대보전지역 90% 등 일부 목표치 수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이나 수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변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질과 관련 지표들이 도시지역 대기질에만 국한될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다. 수자원 지표에는 수질관련 변수의 추가가 필요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나 습지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변수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등 정책 관련성이 높은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질오염

또는 타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대표하는 지표의 추가 등 다양한 주문이 있을 만큼 그 적용성과 한계가 분명하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SDI)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ex)는 환경, 경제, 사회 요소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변수를 개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다.

SDI 지표의 구성은 국가 및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로 대별된다.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SDI 평가방법은 지표별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지표의 과거 변동추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한다. 몇 몇 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이용하고 있지만, 국가간 비교 평가는 국가별 상황이 달라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영국의 평가방식은 1990년을 기준으로 평가년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데, 분석결과에 따라 “clear improvement”, “little or no change”, “clear deterioration”, “insufficient or no comparable data”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표 2-6> 주요 국가 및 기관별 SDI 지표 구성체계

국가·기관	개발 개요	지표 구성
UNCSD	1996년 국가별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정책 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기본체계 발표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28개 영역, 132개 지표
	2001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적용가능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 선정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38개 항목, 57개 지표
OECD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	환경, 사회·경제지표 등 2개 분야, 15개 영역, 33개 지표
EU	1997년 UNCSD의 132개 지표를 기초로 유럽연합에 적용하고자 지표를 개발	경제, 사회,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18개 영역, 46개 지표
	2001년 UNCSD의 57개 핵심지표를 토대로 EU의 상황에 맞도록 지표를 개발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38개 항목, 63개 지표
미국 PCSD	연방정부, UNCSD, 세계은행, 비영리그룹, 단체에 의해 제시된 400개 이상의 목록에서 지표 선정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 22개 영역, 40개 지표
영국	환경지표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를 선정	6개 분야, 147개 지표('05)

SDI는 국가별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 작성이 곤란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환경, 경제, 사회 각 분야별 자료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2-7>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2005)

구분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 및 지표
지속가능성 신호	녹색경영정부, 고위직 여성, 요소자원 가격, 수송비 변화, 규제강화, 공적 이해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적 행동, 교육기관 인식도, 오염저감 지출
지속가능한 경제	폐기물산출및처리, 자원이용, 영역별 폐기물, 가정쓰레기및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효율도, 가구당 에너지사용, 유해폐기물, GDP, 공·사적 투자, 사회적 투자, 인플레이션 비율, 정부차관및부채, 경쟁력/생산성, 교역/수출/수입, 경제활동인구의 취업률, 실직(workless) 가계수, 장기실업, 한 부모가족 비율, 저임금, 장시간 노동취업인구, 병가일수, 산업재해 및 상해비율, 19세 인구의 교육자질, 성인 식자/계산 능력, 교육받지 못하는 인구수, 교육참여, 투자처로서 인식된 기업수, 윤리훈육, 소비자정보, 소비자지출, 영역별 에너지및물소비량, 영역별 폐기물및유해폐기물 배출, 환경관리시스템 채택, 기업의 환경관리지수, 환경및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가정의 물사용및최대 물요구량, 주택의 열효율성, 단위 건축물의 부가가치 합계, 건축폐기물 매립, 신종 기계류의 에너지효율성, 음식 내 살충제 잔류량
지속가능한 공동체	환경민감지역및교외농업 환경계획지역, 유기화합물 생산전환지역, 도로여행의 에너지효율성, 신차의 평균연료소비, 주요 역사유적지역의 빈곤, 해외여행, 운송수단별 레저여행, 화학품, 화물운송, 대형화물차 운행강도, 지역빈곤지수, 지역별 GDP편차, 빈곤과 사회적 배제 경감지표, 신규사업의 출현및실패사례, 소수민족의 실업, 건강한 삶 기대연수, 건강 불평등, (심장마비, 암, 사고, 정신)건강지표, 호흡기질환, 병원 대기환자, 도로교통, 평균 여행기간, 도보여행, 교통체증, 소득관련 이동거리, 취학방법, 접근곤란 인구수, 장애인을 배려한 접근, 지방의 서비스 접근도, 스포츠및문화활동, 살기 부적합한 주거환경, 임시주거지, 연료 빈곤(fuel poverty), 가구및인구 성장, 개발지역 내 신규주택, 도심및비도심 소매점 바닥면적
환경 및 자원 관리	공한지및유휴지, 소음 수준, 환경의 질, 지방의 녹지 접근, 부패위험 1급·2급 구축, 범죄수준, 범죄의 두려움, 지방의제21 이행계획을 가진 지역수, 공동체 정신, 자원봉사활동,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수계내 유해물질,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도의 상승, 해수면 상승, 최종소비자 이산화탄소 배출, 화석연료 고갈,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한 전기, 원자력산업 폐기물, 원전수거물 센터, 대기오염주의보및경보일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및농도, 이산화황및질소산화물 배출, 영국내 산성화, 오존층 파괴, 우수(good or fair) 수질하천수, 물수요및이용, 물사용 감당능력, 누수, 취수, 강·하천의 낮은 수위, 강·호수 영양, 연안·하천수질, 오염물질 해양투기, 유럽목욕물 관련 지시사항 강화, 연안·해양 지역의 생물다양성, 허용제한 내 어획량, 세계 수산업 자원(fisheries) 상태, 녹지 토양 순손실, 농지 표토 내 유기물질 농도, 야생조류 수, 조경, 자연보호협회 특별지정지구(SSSI)의 확장및관리
국제협력과 발전	교외 접근, 생물다양성 행동계획, 멸종위기 토착종, 식물 다양성의 경향, 교외지역의 환경질, 영국 삼림지, 아주 오래된 자연 삼림지역, 지속가능한 삼림지 관리, 국가삼림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수, 회복및정수지역, 지구 전체 인구수, 지구적 차원의 빈곤, 저소득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영국의 공적 지출액,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간 비교, 1인당 소비수준
기타	이전 개발지역 내 신규 주택 건설, 삶의 질 만족도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기존 통계의 자료제약과 불일치, 시계열자료 부족 등으로 지표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지표간 통합이나 연계, 지수화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표를 통합된 집합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지표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제공하는 정보도 부분적이어서 통합이 곤란할 수 있고, 개별적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이용하여 통합 지수화(해당부문을 설명하는 부문별 지수를 구하고 그 부문별 지수를 통합하여 종합 지수화)하는 과정에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제3장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태

제1절 인천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실태

제2절 인천녹색성장정책 추진실태

제3장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태 분석

제1절 인천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실태

1.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시민, 기업, 행정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합의를 통행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1997년에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998년 10월 22일 '살기좋고 활기찬 인천만들기'라는 비전아래 대기, 물, 생태, 폐기물 등 9개 분야 75개 지표를 포함한 의제를 작성하였고, 1999년에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1999년 2월 22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조례 제3319호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문화, 복지, 지역경제, 도시공간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초의제21실천협의회는 남구(2003), 남동구(2004), 계양구(2006), 부평구(2008), 서구(2008)에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구와 강화군에는 기초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인천의제21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선언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정부가 각각 어떤 일을 어떤 순서에 따라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인천의제21은 사회 구성원 각각이 어떠한 일을 어떤 순서에 따라 할 것인가에 따른 목표와 역할을 스스로 정한 것이다. 의제21에는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들이 얼마만큼 잘 실천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표가 있고, 확인 결과에 따라 사회 목표와 단계별 지표들이 수정될 수도 있다. 인천의제21 작성이후, 작성 당시에 비해 사회, 문화, 환경여건과 도시공간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2009년 2월 20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10개 분야 53개 지표를 재작성하였다.

인천의제21은 단순한 환경보전 운동이 아니며, 환경보전을 기본으로 하고 문화, 복지, 교통, 도시계획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문에서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해도 교통부문에서 자동차 통행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경유차량 비율을 늘려나가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할 수 없으며, 대기오염도 감소하기 어렵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크게 환경분야 사업과 사회경제분야 사업, 문화 사업, 시민참여 사업 등으로 구분[10]된다.

○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 만들기를 위한 환경분야 사업
-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 담장 없애고 나무심기 운동 : 푸른인천가꾸기시민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 인천시민 바다되찾기 : 인천해안철책선 철거운동
-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NGO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
- 기후변화대응사업 : 기후변화포럼, 기후강사양성 및 찾아가는 기후학교 실시
- 사막화방지실천사업 : 인천-몽골 희망의 숲 조성
- 지속가능한 인천연안도서 만들기 : Eco-Island 조성

○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 만들기를 위한 사회경제분야 사업
- 생태기행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맺기 사업
- 인천산업단지 포럼 : 지방산업단지 재편에 대한 정책제안
- 품앗이 활성화 사업 : 품앗이 활동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도농교류 활성화 및 식품 안전 교육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유통 체계 구축

10)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내부자료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 인천주민자치대학 운영
- 풀뿌리 마을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 만들기를 위한 문화 사업
- 인천의 관광코스 21개를 개발하고 "인천을 탐하라"발간
- 인천시민문화예술 모니터링 : 시민과 함께하는 좋은 문예 공연 만들기
- 인천 30cm서가운동 :"인천책을 꽂자, 인천책을 보자"
- 문화 인천 조례만들기 : 문화포럼
- 문화마을 만들기 : 인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 문화의제 네트워크 구축 : 기초·전국·동아시아 문화의제 네트워크

○ 살기좋고 활기찬 인천만들기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
- 제11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및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
- 인천시민 재활용 한마당 및 재활용 공모전
- 인천 차 없는날 : 9월 22일은 승용차를 두고 나오세요!
- 인천 녹지축 보전 운동
-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 온실가스줄이기 범시민실천 운동 전개

2.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에서 인천에서는 지방의제21제도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다.

2007년 8월 3일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5조, 13조, 18조 등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확보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문제가 인천지역사회에 대두되었으나 또다시 무산되었다.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은 제

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를 삭제하였으며,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도 지방위원회와 관련된 문구는 삭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동법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동법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동법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인천 RCE)는 2006년 12월 승인된 이후, 2009년부터 인천의제21에서 운영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인하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인천 RCE[11]에는 인천광역시의 평생학습팀, 국제협력과, 환경정책과 등과 인하대, 인천대,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공사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등은 교육현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LH공사는 지속가능발전 도시계획 분야, 인천관광공사는 생태관광분야,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관으로는 환경분야의 UNEP과 경제경영분야의 UNESCAP 등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1) 변병설, 2011,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인천발전연구원.

가. 지속가능한 교육

경제적 지속가능성 교육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한 가정경제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교육은 자원절약적 생활방식전환과 실천을 위한 교육으로서, 알고는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을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복원 의식을 높이고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교육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이 역사적인 잠재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계승발전, 지역고유의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의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하여 창조적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아카데미에서 2011년 10주 과정으로 강의를 마련하였고 2012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사회, 역사문화, 환경 측면에 대한 교육을 망라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생겼다는 응답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강의를 마친 후 서로 생각과 의지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였고 시상도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기후변화 교육이 중요한데 학부모의 호응이 좋고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호응이 높아 교육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다. 그런가 하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디자인 및 건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고 인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시킨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나. 지속가능성 교육을 위한 교류

브라질 꾸리찌바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을 통해, 지속가능성 교육네트워

크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네덜란드 케르크라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통영 RCE-인천 RCE-울주 RCE 등 국내 지속가능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유네스코와 인천 남구청와 함께 평생학습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국외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건강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호주의 건강도시 조성사례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다. 향후 사업방향

정규학교에 지속가능 발전을 내재화하고 초등학교 현장학습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중학교의 창의재량학습에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하며, 대학 교양과목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생태자원 등에 대한 외국인 교육사업과 다문화 가족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탈북자 정착을 위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nowledge Partnership 사업이나 세계를 위한 다리 역할(Bridge to the world), 청소년들이 문화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들을 탐구하여 발표하고 평가·시상하고 해당도시를 탐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하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협력프로그램을 해나갈 계획이고, 여러 계층을 포용할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환경·사회·경제의 축에서 균형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4.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전략보고서[12)]

부평구는 2011년 11월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12) 부평구, 2011,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연구.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011년 3월부터 8개월간 진행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워크숍과 시민사회, 전문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부평구의 대내외적 환경 분석과 재정여건을 확인하고 정책형성 시스템을 진단하여 구정운영의 종합비전과 부문별 전략을 통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했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수립·정착 - 성숙 - 심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부평구의 미래비전은 참여와 나눔 속에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부평의 발전기틀을 확고히 갖추는 것으로, 엄청난 건축사업을 사후적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수백억의 빚더미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이웃이 함께 공존하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부평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폐쇄적 행정운영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행정의 문호를 민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부평의 자산인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공무원과 민간이 힘을 합해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및 산업계획과 도시계획, 환경계획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부평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부평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정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림 3-1>과 같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한 부평'이라는 비전과 4개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교육·문화 전략으로는 '문화가 함께 하는 부평', 환경 전략으로는 '자연이 함께 하는 부평', 경제 전략으로는 '다 함께 풍요로운 부평', 복지 전략으로는 '이웃이 함께 하는 부평'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행기반 전략으로 설정하여 거버넌스 구축, 행정조직 개편,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5대 전략

<그림 3-1>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5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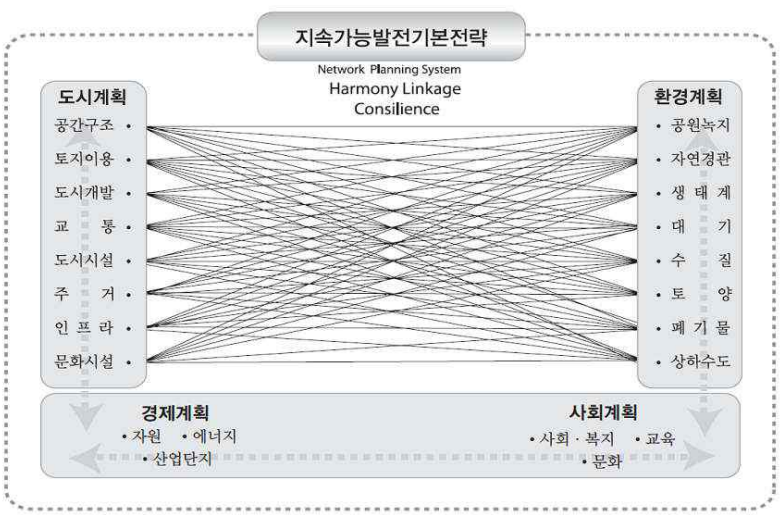

<그림 3-2> 부평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의 기조 및 전제

이처럼 미래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관점에서 비전과 부문별 전략(5대 전략 - 17개 이행과제 - 57개 단위과제)을 제시하여 그동안 국·실·과별 행정체계에 따른 개별 사업위주의 관점에서 전환하여 전략별, 과제별 목표를 설정하였고, 예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거버넌스를 이뤄가면서 견고하고 안정된 구정운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에 작성된 이행계획(안)을 토대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칭)를 통한 평가와 설정된 지표의 점검, 보완 등의 환류를 통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과 향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계획 및 전략수립의 전례가 없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소통과정이 미흡했던 이유로,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의회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계획수립의 시작과 진행이 구청장의 정책의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이 안정된 이후에 조치되어야 할 사안[13]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13) 특히 성과주의 예산시스템과 연계과정에서 내부 조직원들이 시스템의 의미와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분야별로 지속가능성 제고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인센티브제도, 개인 및 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는 등 거버넌스 시스템의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스템의 존재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인천녹색성장정책 추진실태

1.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에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법 제12조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9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녹색산업·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인프라의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대통령령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2009년 7월 14일 국가전략 녹색성장 3대 전략 10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인 2009년 7월 28일 4개 분과에 32명(당연직 11명, 위촉직 21명)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2009~2013)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3-3> 국가전략 녹색성장 3대 전략 10대 과제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탄소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인지·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성 제고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성 사회구조 구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기반 구축 등

◈ 신성장동력 창출

- 민간부문의 녹색기술, 산업 개발 활성화
- 기존 산업의 녹색혁신, 자원순환형 경제·사업구조 구축
-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
- 녹색금융, 탄소시장, 녹색일자리 창출 등 경제 순환 구조 확립 등

◈ 삶의 질 개선 및 국가 위상 강화

- 녹색성장 분야 선진국가 구현,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녹색생활 체험 교육 확충, 제도정비, 생태관광 활성화 등 실천기반 마련
- 녹색국토·도시조성, 녹색교통체계 구축, 생태공간 확충등 환경개선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2009~2013) 추진계획은 4개의 기본방향과 그 취지를 충족하기 위하여 4대 전략으로 구획되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혁명

- 세계 명품브랜드 그린 인천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치밀한 대비

○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기술의 선도 기관으로 녹색산업의 메카 만들기

○ 녹색공간 창출 및 저탄소 도시인프라 확충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및 저탄소·저비용 도시 인프라 건설

<그림 3-4>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비전과 전략

○ 1단계('09~'13년) :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 2단계('14~'20년) :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 완성
○ 3단계('21~'50년) : 인천형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발전모델의 브랜드화

<표 3-1>~<표 3-4>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별로 단위사업과 사업예산, 추진부서를 정리한 것이다. 예산비중으로 보면, 녹색공간 및 저탄소도시 인프라 확충과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단위사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조 1,075억원의 사업예산 중 10개 사업의 예산비중이 94%를 상회하고 있다.

<표 3-1>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 혁명부문의 단위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예산 (백만원)	추진부서
계		2,107,551	
1.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 혁명		2,343	
1-1. 법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54	
1-1-1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12	광역기획담당관실
1-1-2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	신성장동력과
1-1-3	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	-	광역기획담당관실
1-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2	신성장동력과
1-1-5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환경정책과
1-1-6	폐기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40	환경정책과
1-1-7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운영	-	신성장동력과
1-2. 녹색정책추진 및 녹색시장 활성화 여건조성		170	
1-2-1	나무은행 운영	100	공원녹지과
1-2-2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70	환경정책과
1-3. 녹색생활 혁명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실현		1,560	
1-3-1	기후변화 전문강사 순회교육	43	환경정책과
1-3-2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상설 기후학교 운영	-	환경정책과
1-3-3	공공기관 등 에너지 담당자직무능력 배양	24	신성장동력과
1-3-4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추진	400	환경정책과
1-3-5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40	환경정책과
1-3-6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100	신성장동력과
1-3-7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실천운동 확산	258	환경정책과
1-3-8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실천 홍보	32	신성장동력과
1-3-9	ONCE FOOD 운동	60	위생정책과
1-3-10	녹색행사 모니터링 통한 탄소상쇄공원 조성	100	환경정책과
1-3-11	LED 조명기기 보급	503	신성장동력과
1-4. 그린인천 마케팅 및 그린 리더쉽 제고		559	
1-4-1	EAAF 파트너십 사무국 협력체계 구축	509	환경정책과
1-4-2	해외 환경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50	환경정책과

<표 3-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부문의 단위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예산 (백만원)	추진부서
계		2,107,551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134,488	
2-1. 온실가스 감축		15,523	
2-1-1	기후변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환경정책과
2-1-2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운영	15,523	정보화통계담당관실
2-2. 온실가스 정보관리 및 정책 지원체계 확충		40	
2-2-1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40	환경정책과
2-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147	
2-3-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	환경정책과
2-3-2	Low Carbon IFEZ 30 추진	147	경제자유구역청
2-4.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충		118,778	
2-4-1	건물 및 옥상녹화 사업	161	공원녹지과
2-4-2	계양구 아나지길 가로환경 개선	800	도시디자인추진단
2-4-3	명품 녹색도시 공원 및 녹지 조성	105,727	경제자유구역청
2-4-4	푸른송도만들기 1천만 그루나무심기	12,090	경제자유구역청
2-5. 기후변화의 시민공감대 형성과 정보공유		-	
2-5-1	기후변화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	환경정책과

<표 3-3>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부문의 단위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예산 (백만원)	추진부서
계		2,107,551	
3.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977,026	
3-1. 녹색사업 아이템 발굴 및 녹색상품 개발		3,846	
3-1-1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	500	농업기술센터
3-1-2	친환경 녹색어업 육성	3,346	수산과
3-1-3	신재생에너지 분야 녹색산업 기업유치	-	경제자유구역청
3-2. 환경·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지원		27,238	
3-2-1	도시철도 2호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	도시철도건설본부
3-2-2	그린 카 보급	3,500	신성장동력과
3-2-3	특정경유차 저공해 관리	23,710	대기보전과
3-2-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저감장치관리	28	대기보전과
3-3. 에너지효율 및 지급률 제고		280,763	
3-3-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	40	환경정책과
3-3-2	도시가스 보급 확대	20,921	신성장동력과
3-3-3	집단에너지 보급	223,917	신성장동력과
3-3-4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및 전처리시설 설치	31,000	경제자유구역청
3-3-5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916	신성장동력과
3-3-6	그린-홈 지원사업	400	신성장동력과
3-3-7	사랑의 집고치기 범시민 참여사업	-	사회복지봉사과
3-3-8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91	정보화담당관실
3-3-9	농어촌 공동편의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900	신성장동력과
3-3-10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2,128	신성장동력과
3-3-11	도시철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스템 구축	450	도시철도건설본부
3-4. 녹색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646,267	
3-4-1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	6,667	수질보전하천과
3-4-2	인천 녹지축 둘레길 조성	600	공원녹지과
3-4-3	경인아라뱃길 사업	639,000	항만공항시설과
3-5. 고부가가치 생태관광 활성화		17,632	
3-5-1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농촌개발사업	4,970	농축산유통과
3-5-2	동서남 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800	도시디자인추진단
3-5-3	무의까치놀섬마을 운영	10	농업기술센터
3-5-4	계양구 까치공원 광장주변 경관개선	600	도시디자인추진단
3-5-5	Green 시민 관광농원 조성	333	농업기술센터
3-5-6	반딧불이 양성화 추진	19	환경정책과
3-5-7	월미 해안둘레길 조성	270	개발계획과
3-5-8	강화수목원 조성	2,000	공원녹지과
3-5-9	계양산 생태탐방로 조성	1,100	공원녹지과
3-5-10	인천대공원 습지원 조성	1,426	공원녹지과
3-5-11	강화 자연휴양림 조성	3,604	공원녹지과
3-5-12	서부 간선수로 생태공간 조성	2,500	농식품유통과
3-6. 녹색성장 연구개발과 그린경영 컨설팅		1,280	
3-6-1	강화나들길 역사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1,250	관광진흥과
3-6-2	에코아일랜드 조성	-	신성장동력과
3-6-3	그린경영(기후 홈닥터) 운영	30	환경정책과

<표 3-4> 녹색공간 및 저탄소도시 인프라 확충부문의 단위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예산 (백만원)	추진부서
계		2,107,551	
4. 녹색공간 및 저탄소도시 인프라 확충		993,694	
4-2. 친환경 건축 등 저비용 도시건설 및 재생		268,475	
4-2-1	깨끗한 인천앞바다 만들기	9,249	수산과
4-2-2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	528	수질보전하천과
4-2-3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AG경기장 건설	258,698	경기장건설과
4-3. 친환경 교통 물류인프라 조성		19,558	
4-3-1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3,000	교통기획과
4-3-2	수도권 광역(인천-김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846	교통기획과
4-3-3	1사 1도로 클린제 지원사업	120	대기보전과
4-3-4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592	도로과
4-3-5	청라-강서간 BRT 건설 시범사업	13,000	교통기획과
4-4. 대중교통 및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		703,561	
4-4-1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	도로과
4-4-2	자전거 이용시설 보완	100	경제자유구역청
4-4-3	도심형 자전거 보급	1,000	도로과
4-4-4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62,527	도시철도건설본부
4-4-5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	도시철도건설본부
4-4-6	서울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사업	47,488	도시철도건설본부
4-4-7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197,446	대중교통과
4-4-8	도심형 자기부상열차 건설	95,000	대중교통과
4-5.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지 확충		2,100	
4-5-1	강화 조력발전소 공동개발	-	신성장동력과
4-5-2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개발	-	신성장동력과
4-5-3	덕적도 조류발전단지 공동개발	-	신성장동력과
4-5-4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2,100	신성장동력과

<표 3-5>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20대 과제별 사업예산

사 업 명	사업예산(백만원)
계	2,107,551
1.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 혁명	2,343
1-1. 법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54
1-2. 녹색정책추진 및 녹색시장 활성화 여건조성	170
1-3. 녹색생활 혁명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실현	1,560
1-4. 그린인천 마케팅 및 그린 리더쉽 제고	559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134,488
2-1. 온실가스 감축	15,523
2-2. 온실가스 정보관리 및 정책 지원체계 획충	40
2-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147
2-4.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충	118,778
2-5. 기후변화의 시민공감대 형성과 정보공유	-
3.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977,026
3-1. 녹색사업 아이템 발굴 및 녹색상품 개발	3,846
3-2. 환경·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지원	27,238
3-3. 에너지효율 및 자급률 제고	280,763
3-4. 녹색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646,267
3-5. 고부가가치 생태관광 활성화	17,632
3-6. 녹색성장 연구개발과 그린경영 컨설팅	1,280
4. 녹색공간 및 저탄소도시 인프라 확충	993,694
4-2. 친환경 건축 등 저비용 도시건설 및 재생	268,475
4-3. 친환경 교통 물류인프라 조성	19,558
4-4. 대중교통 및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	703,561
4-5.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지 확충	2,100

이러한 현상은 도시인프라 건설사업을 녹색성장사업으로 편입하다보니 초래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인천광역시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있지만 정작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구조 창안”과 관련한 사업은 부재하다는 점은 특이하다. 예산안배에 있어서 소수 몇 가지 정책사업에 집중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그 정책의 구성체계가 불균형을 이뤄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녹색성장사업으로서의 요건과 기대효과를 보완하지 않는 한, 특정 단위사업이 과연 녹색성장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유형의 단위사업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

<표 3-6>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단위사업

관리번호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예산비중 (%)	누적비중 (%)
계		2,107,551	100.00%	-
3-4-3	경인아라뱃길 사업	639,000	30.32%	30.32%
4-4-4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62,527	17.20%	47.52%
4-2-3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AG경기장 건설	258,698	12.27%	59.80%
3-3-3	집단에너지 보급	223,917	10.62%	70.42%
4-4-7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197,446	9.37%	79.79%
2-4-3	명품 녹색도시 공원 및 녹지 조성	105,727	5.02%	84.81%
4-4-8	도심형 자기부상열차 건설	95,000	4.51%	89.31%
4-4-6	서울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사업	47,488	2.25%	91.57%
3-3-4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및 전처리시설 설치	31,000	1.47%	93.04%
3-2-3	특정경유차 저공해 관리	23,710	1.13%	94.16%
3-3-2	도시가스 보급 확대	20,921	0.99%	95.15%
2-1-2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운영	15,523	0.74%	95.80%
4-3-5	청라-강서간 BRT 건설 시범사업	13,000	0.62%	96.51%
2-4-4	푸른송도 만들기 1천만 그루나무심기	12,090	0.57%	97.08%
4-2-1	깨끗한 인천앞바다 만들기	9,249	0.44%	97.52%
3-4-1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	6,667	0.32%	97.84%
3-5-1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농촌개발사업	4,970	0.24%	98.07%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녹색성장사업의 다양한 추진주체가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자가 없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위사업별로 정량화된 성과지표와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대부분 공정진도율에 의존하다보니,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등 총괄적인 정책목표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실제 녹색성장 정책사업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업들이 무더기로 함께 담겨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들을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셋째, 인천광역시의 녹색성장 정책은 그 구성체계의 방대함이나 짜임새에 비해 핵심 사업 몇 개가 투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정책의 수많은 영역에서 그 실행력을 대단히 취약하게 만든다. 넷째, 인천광역시 녹색금융은 실제 실행되고 있는 몇몇 예들에서 보면 예산투입 절대액이 너무 작고 그 대상 범위도 매우 좁은 실정이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시정에의 도입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3절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및 정비방안

제4장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1절 시정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 도입

1. 행정가치로서 지속가능발전

행정의 목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가치를 명시하는데 미흡했다.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이 악화되고, 환경 훼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사회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존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지속가능발전은 한 사회 내의 형평성과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뿐 아니라 인간과 다른 생물종 간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적절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인천광역시가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패러다임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철학이나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은 통합적 접근이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 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서 간의 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정책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기능별 부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발

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한다. 시정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로 세부사업들을 배치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과제 수립 과정은 하나의 이행과제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부서의 세부사업들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서 간의 수평적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UN이 「우리 공동의 미래(1987)」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요구한 유연성과 자기 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3. 행정의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에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행정의 정책이 다수 시민이 아니라 소수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위험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의 자기 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크며, 사회 변화의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현 사회에서는 외부의 지식과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소통됨으로써 내부 인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거버넌스 관점은 이미 행정의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고, 시민참여예산제와 같이 다양한 제도에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에너지 사업 등의 경우 시민의 주체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비전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지향하는 본연의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인천의제21이나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정책이 지향해왔거나 추진한계에 직면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RIO+20 회의를 앞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2가지 주제인 녹색경제[14]와 제도적 체제[15]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틀 속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인 녹색성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 “시민사회”라는 3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키워드로 표현하였다. 각 키워드는 몇 가지 통합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의 키워드를 융합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지향점을 모은 “더불어 행복한 녹색경제공동체, 인천”이라는 비전을 제안하게 되었다.

2.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목표와 과제

“환경”은 쾌적하고 푸르른 환경과 건강한 공생을 의미하며, 기존의 환경영역에 녹색성장의 한 축인 저탄소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영역을 추가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환경영역은 저탄소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 자연공생과 생태복원, 생활환경개선, 건강도시 지향, 갯벌과 청정바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이슈를 포괄한다.

“경제”는 풍요롭고 미래지향적인 녹색경제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녹색경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녹색경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경제영역

14)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 Green Economy
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 Institutional Framework

은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과 산업, 산업재생과 고도화, 생태관광거점, 건강한 일자리, 도시인프라 및 교통과 관련한 이슈를 포괄한다.

"시민사회"는 웃음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미로서, 복지차원을 뛰어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사회통합과 소통의 관점에서 나눔과 공유, 생활 속 문화예술, 가족과 다문화 사회, 도농네트워크, 노령화 사회, 소통과 거버넌스, 그린 리더쉽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림 4-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 등 제도정비와 행정조직 및 업무평가 연계, 지속가능성 지표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견실한 거버넌스 재건, 문화환경교육 및 전방위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기반"을 추가하였다.

제3절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및 정비방안

1.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개선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기조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및 유관활동 정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중앙부처를 일원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중앙의 관련부처별로 지자체에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유발요인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16]이다.

둘째, 전담부서의 인력과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조율 및 전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광역기획담당관실의 녹색성장팀 조직(현원 1팀 3명[17])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비전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인천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 전담조직의 추가업무 대응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자체 총 정원의 상향 조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업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통합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 정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별로 환경개선효과와 경제적

16) 김현호·김선기(2009),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효율증진효과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분석작업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속에 담겨 있는 세부 정책내용들 중, 앞서 살폈던 기준에 근거하여, “D”급 녹색성장(Pseudo Green Growth) 정책과 “E”급 녹색성장(Disguised Green Growth) 정책으로서 실제 녹색성장 정책사업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별도로 구분해내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인천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세부사업 중 녹색성장정책과 무관한 사업을 제외시키는 한편, 녹색성장추진계획에서 추진하지 않은 녹색성장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넷째, 녹색성장과 관련한 각종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정책수단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과정에 따른 성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책자료를 확보한다. 특히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정책에서 소수의 특정 사업에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기존의 보급 확대 차원에서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녹색산업 진흥차원에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의 도입을 확실히 한다.

다섯째,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적 기여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실용적 접근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지자체가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경쟁적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속가능발전이나 녹색성장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축과 확대에 힘써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에 지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수요를 기초로 하여,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또는 기존 인천광

역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통합정비하기 위한 (가칭)“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체계구축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시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통합 및 기능강화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다. 그러다가 2010년 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동법 제20조에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해당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에 착안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활성화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3개의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의 분과구성 개선과 분과별 전문가 보강[18]을 통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보강(안)을 제출한 바 있다.

18) 당초) 4개 분과 25명(당연직 6명, 위촉직 19명) → 변경) 4개 분과 33명(당연직 6명 위촉직 27명)

<표 4-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유관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법적근거	인원	구성여부	비고
녹색성장 위 원 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50인 이내	구성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상위법 근거 없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20인 이내	미구성	기후변화대책위원회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위임토록 조례개정 완료
에너지 위원회	·에너지법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15인 이내	구성 2005. 2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법적근거 없음	-	미구성	의제21실천협의회 기능대행

<그림 4-2> 인천광역시의 녹색성장위원회 기능 보강(안)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 녹색성장위원회 확대개편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양립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폐지안

1안) 녹색성장위원회 확대개편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분과위원회 및 위원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고 있어 현 법체계에서도 행정적 안정성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원 취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2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양립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대로 기능하도록 하여 양립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는 각각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두 위원회가 중복된다는 한계가 있다.

3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폐지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동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에서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하도록 하는 조치가 행정적 일관성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주장[19]과 맥을 같이 한다.

19) 최정철, 2011, “인천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화 전략”, 인천지속가능발전포럼 창립

이 중 2안)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지향과는 상이한 대안이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존치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체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안)은 경제적 성장, 사회적 안정, 환경적 위험 방지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조항을 추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2013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해법으로 1안)을 채택하되,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유지하거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기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뿐 아니라 유사기능을 가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RIO+20 이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2013년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3안의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바 있는 <그림 4-2>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보강(안)은 시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미나 : 지구사회와 인천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제도화 전략,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의 효율적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관련 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담당부서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교류센터 내부방침에 의해 2012년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인천RCE 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와 국제기구 등에 대한 통합관리 부서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2>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현황

명칭	역할(기능)	설치근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	시민·기업 및 시가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행동목표 및 실천계획수립하고 실천과제를 수행하는 협의회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환경정책과
인천지속가능개발교육센터(RCE)	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해 유엔대학(UNU)에서 세계 각지에 조직한 지역거점교육센터	인천지속가능개발교육센터 인증(2007. 1월)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센터
UN지속가능발전사무소(UNOSD)	UN의 중요기구인 유엔사무국경제사회국 산하기관으로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이행평가와 상호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사무소	UN지속가능발전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체결(2011. 4월)	환경정책과

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2007년 8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4조는 지방위원회가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반하여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련 조례 제정,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보고와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20]. 하지만 인천광역시 군·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군·구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군구이행계획,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운영성과 전반에 대한 각 분야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과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시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작성하고 보고하게 될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금 폐지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21]와 제12조[22]에서 정한 원칙을 준용하여 지

---

20) 지속가능성보고서와 유사한 보고 의무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매년 작성하는 기후변화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에너지 백서 등이 있다.

2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과의 조화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의 조화
3. 필요한 재원 및 실현 가능성

22) 제12조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2010년 강동구에서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구청의 조직차원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통합하여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와 2011년 부평구에서 작성한 지속가능발전 전략보고서의 작성 사례는 인천광역시와 여타 군·구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는데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인천광역시의 산하 공기업에서도 통합경영을 시작하는 시점을 계기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23]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역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2008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지방 공기업으로서는 서울메트로가 최초로 2008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2009년부터 서울시설공단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24]했다.

참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또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윤리경영 등의 단어들이 최근의 화두이다. 미국의 주요 CEO들은 3P(People, Planet, Profit)를 경영 목표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23)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1997년 세리즈 원칙을 제정한 미국의 NGO인 CERES(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구이다. GRI는 1999년 3월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상설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99년 5월의 토론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회의의 상설기관화가 결정되고, 이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2년 4월 상설기관으로서의 GRI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2002년 4월 4일 국제연합 본부에서 이사 취임식이 거행되었으며, 제1차 이사회에서는 본부의 소재지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결정하였다. GRI는 2000년 6월에 지속가능성보고서가이드라인 제1판을 발표(G1)하였고, 2002년 8월과 2006년 11월, 2011년 3월 23일에 각각 개정판(G2)과 제3판(G3), 제3판의 보완판(G3.1)을 발표하였다. 2013년 발표계획으로 있는 제4판(G4)을 준비하고 있다. G3는 인권분야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GRI는 인권분야, 지역사회영향 및 성관련 지표를 보완한 3.1버전을 2011년 3월에 발표하였다.

24) 최정철(2011).

제시하고 있는데, People은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Planet은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Profit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말한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SR을 2010년 11월 공표하였는데, 여기서 'SR'은 'CSR'에서 'C(Corporate)'가 빠진 것으로 기업 외의 공공단체나 조직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4. 지속가능발전 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조직이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를 향해 조직원들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표이다. 지표의 적절성에 따라 사업이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직 경영에 있어서 적절한 지표 설정의 중요성은 크다. 예를 들어, 지표를 관할 지역 내의 도서관 숫자로 하면, 도서관을 짓는 것이 사업 목표가 되어 결과적으로 도서관 수는 많으나 도서구입비나 운영비 부족으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도서 대출 건수를 지표로 삼으면 도서의 연계 서비스와 전달 서비스를 개선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을 교정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해 행정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세부 사업의 성과 지표의 연계성을 밝혀줌으로써, 개별 업무가 어떤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의 목표 대비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행과제 단위의 논의에서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는 각 부서 사업들 사이의 예산 효율성이 평가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보를 선택하여 공개해오던 각종 백서형태를 대체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내외부에 공표하는 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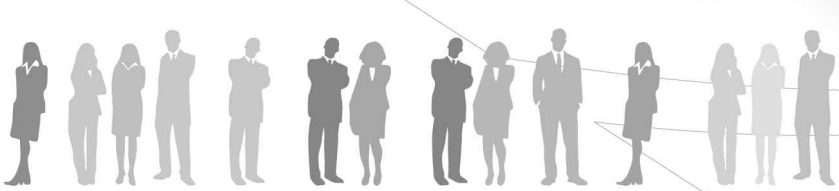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20주년이 되는,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Rio+20 지속가능발전 UN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실행의지를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Rio+20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문서는 향후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회원국 및 유엔기구들은 결과문서에 반영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및 국제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의 3가지를 핵심으로 놓고 이야기한다.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적 활동의 역할과 기여를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시민사회그룹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더 큰 프레임인데 이것을 녹색경제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이 글로벌 이슈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의 실천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문제를 도시의 단계로 내려서 생각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지역과 글로벌을 연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참여가 시스템의 구성에 중심이 되고 있다.

2005년 6월 정부는 국정철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천명하고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이 있었다. 2011년 2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77개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를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총 7장 64개 조문으로 구성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9년 7월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속에 담겨 있다. 2009년 총리실 주관으로 녹색성장 부문 평가가 실시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은 "C"등급의 대용 녹색성장 정책이 대부분이며 "D"등급의 유사 녹색성장 정책 "E"등급의 위장 녹색성장 정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 포함

-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치가 추세적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해야 "C"등급(대용 녹색성장) 수준에 불과한 상태를 발생

- 신재생에너지의 물량적 확대에 치중하는 공급 우선주의 정책

- 의무공급제도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녹색산업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이다.

1996년 UNCSD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 발표하였는데, UNCSD와 OECD, EU, 미국, 영국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지속성지수는 환경의 질, 환경오염 부하량, 환경위해 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국제적 책임공유 등 5개 분야로 평가변수와 지표별 각국의 역량을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로 순서화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국가별 역량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각 국의 환경개선정도(performance)를 계량화한 지수로서 국가별 환경개선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지만 실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지는 않고 목표지와의 거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ESI와의 차별화가 미양하고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기질이나 수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변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ex)는 환경, 경제, 사회 요소 가

운데 대표성이 있는 변수를 개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SDI는 국가별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 작성이 곤란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며 나라,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시민, 기업, 행정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며 환경, 교통, 문화, 복지, 지역경제, 도시공간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협의회이며 인천지방의제21제도화 차원의 인천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되지 못하였다. 2006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인천 RCE)는 2009년부터 인천의제21에서 운영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평생학습팀, 국제협력과, 환경정책과 등과 인하대, 인천대,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교육현장, 분야별 역할수행 등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부평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워크숍과 시민사회, 전문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부평구의 대내외적 환경분석과 재정여건을 확인하고 정책형성 시스템을 진단하여 구정운영의 종합비전과 부문별 전략을 통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자체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계획 및 전략 수립의 전례가 없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소통과정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의회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구청장의 정책의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이 안정된 이후에 조치되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009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2009~2013)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광역시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있지만 정작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구조 창안"과 관련한 사업은 부재하다

는 점은 특이하다. 인천광역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들을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예산안배에 있어서 소수 몇 가지 정책사업에 집중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녹색성장사업의 다양한 추진주체가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자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단위사업별로 정량화된 성과지표와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제언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존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지속가능발전은 한 사회 내의 형평성과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뿐 아니라 인간과 다른 생물종 간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적절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행정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은 통합적 접근이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 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서 간의 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정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로 세부사업들을 배치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과제 수립 과정은 하나의 이행과제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부서의 세부사업들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서 간의 수평적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에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바람직하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의 자기 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 거버넌스 관점은 이

미 행정의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고, 시민참여예산제와 같이 다양한 제도에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에너지 사업 등의 경우 시민의 주체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발전의 틀 속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인 녹색성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 “시민사회”라는 3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키워드로 표현하였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지향점을 모은 “더불어 행복한 녹색경제공동체, 인천”이라는 비전을 제안한다.

“환경”은 쾌적하고 푸르른 환경과 건강한 공생을 의미하며 “경제”는 풍요롭고 미래지향적인 녹색경제를 의미하고 “시민사회”는 웃음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미이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조례 등 제도정비와 행정조직 및 업무평가 연계, 지속가능성 지표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견실한 거버넌스 재건, 문화환경교육 및 전방위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기반”을 추가하였다.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및 정비방안

1)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개선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기조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녹색정책의 추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력을 낭비하고 민원유발요인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녹색성장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및 유관활동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현 조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

을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부서의 인력과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조율 및 전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셋째, 사업별로 환경개선효과와 경제적 효율증진효과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분석작업을 한다.

넷째, 녹색성장과 관련한 각종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정책수단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과정에 따른 성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책자료를 확보한다.

다섯째,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적 기여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실용적 접근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녹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지자체가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경쟁적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축과 확대에 힘써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에 지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또는 기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통합정비하기 위한 (가칭)“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체계구축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시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추진체계정비 및 기능강화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활성화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3개의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

1안) 녹색성장위원회 확대개편안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분과위원회 및 위원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 행정적 안정성 담보가능, 그러나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지속가능 발전의 원 취지 반영에 한계점 우려

2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양립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되, 기 설치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대로 기능하도록 하여 양립시키는 방안으로서, 위원회의 중복에 한계점 우려

3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후, 녹색성장위원회 폐지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동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

3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조항을 추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대안이다.

단기적 해법으로 1안을 채택하되,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유지하거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기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관련 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와 국제기구 등에 대한 통합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군·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군·구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군구이행계획,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운영성과 전반에 대한 각 분야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과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시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조직이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를 향해 조직원들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을 교정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해 행정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행과제 단위의 논의에서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는 각 부서 사업들 사이의 예산 효율성이 평가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연구계획과정에서 시도했던 녹색성장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차이점과 대안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구획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후속적인 시책평가, 지표개발 및 적용과정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체계 구축, 시책추진 및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평가, 도시지표와의 비교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정작업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성진, 2009, 녹색성장 위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발전 전략, 미래기획위원회.

경기도, 2010,『경기도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고재경·박성훈, 2009, 녹색성장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와 추진 방향, CEO REPORT, 경기개발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1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김현호·김선기, 2009,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호석 외, 2009,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의미와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요약본).

박성현, 2009, “녹색성장,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녹색성장전략과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 개발, 제30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제58회 한림과학기술포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성현·유의선, 2009, 녹색성장 전략의 국가간 비교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박연희, 2011,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인천발전연구원.

박희일·김용남, 2006,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 및 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 극동정보대학논문집 제13집, 극동정보대학, pp.495-521.

변병설, 2011,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인천발전연구원.

부평구, 2011,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연구.

유영성 외, 2010, 녹색성장 정책의 진단 및 개선안, 정책연구 2010-32, 경기개발연구원.

전재경, 2009,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서강법학(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pp.25-43.

천대윤, 2011, “바람직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과제”, 지방행정연구(제25권 제2호) 통권8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37-56

최정철, 2011, “인천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화 전략”, 인천지속가능발전포럼 창립세미나 : 지구사회와 인천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제도화 전략,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함태성, 2009,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법제연구(통권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pp.107-137.

Konrad Otto-Zimmermann, 2011, “RIO+ 20과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ICLEI 전략”, RIO+ 20과 한국지방의제21,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푸른경기21실천협의회·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IDI연구보고서 2011-57

지속가능발전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발 행 인 김 민 배
발 행 일 2011년 12월

발 행 처 인천발전연구원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260-2600
FAX (032)260-2629
http://www.idi.re.kr

ⓒ 2011 인천발전연구원

ISBN 978-89-5678-395-6 935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